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634호
- 나. 발 의 자 : 오승록 의원 외 2명
- 다. 발의일자 : 2015년 7월 23일
- 라. 회부일자 : 2015년 7월 27일

2. 제안이유

- 변화하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서울시복지재단의 조직 운영 등 상위 법률과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명칭변경 및 조항 신설 등으로 이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제정·시행에 따른 근거법령 삽입 및 변경(안 제2조, 제6조)
- 나. 임원 선정의 공정성 증대와 이를 통한 이사회의 전문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임원의 임면 방법 등 변경(안 제7조 제2항, 제4항)
- 다. 서울시복지재단의 사업내용 확대(안 제4조)

라. 서울시복지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의 순서 개정(안 제9조 제3항)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5. 검토의견

가. 개요

-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14.3.24. 제정, 2014.9.25. 시행)에 따라 서울시복지재단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단의 사업 범위를 정하고 있는 조례 규정이 복지시설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복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공공과 민간의 협력 강화 및 지역단위 복지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함.
- 또한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임명 시 실제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임원 추천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전문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을 조례에 명문화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일부 자구 수정함.

나. 조례 개정의 필요성(타당성) 검토

- 재단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 변화되어 왔으나, 조례는 2010년 1월 이후 변경된 내용의 반영이 없이 복지시설 및 서비스 단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른 변경된 재단의 사업 내용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임.
- 본 개정 조례안은 변화하는 복지환경을 반영하고 재단 사업과 조례와의 정합성을 강화하여, 현재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및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대한 조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등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2014년 제정된 상위 근거 법령(「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추가 명시하는 것과 임원 임명과 해임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표준정관(안)」을 반영하여 이사장과 대표이사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치도록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긍정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임.

다. 조항별 주요 검토의견

1) 재단의 사업 확대(안 제4조 관련)

- 본 개정안 제4조의 규정은 변화된 복지환경을 반영하여 서울시복지재단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의 복지시설 중심으로 규정 되었던 사업 내용을 공공과 민간의 협력 강화 및 지역단위 복지 사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는 현재 조례 제4조제1항제12호(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따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공익법센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사업 등에 대하여 좀더 명확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단, 기존에 “복지시설”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던 재단의 사업을 “복지분야” 전반으로 사업영역 확대 근거를 마련한 것이 서울시복지재단의 지나친 사업 확장으로 이어지게 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임.

<제4조(재단의 사업)>

현 행	개 정 안
1. 복지시설의 보조금 교부기준 미련 및 교부액의 심사 2.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및 서비스 평가 3. 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관련 심의지원 4. 복지시설 회계절차 개선 및 회계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 5. 복지프로그램 개발·보급 6. 복지시설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7. 복지시설 종사자교육 8.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상담·자문서비스 9.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 및 관련시설 운영 10. 복지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는 사업 12.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1.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2. 복지 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 3. 복지 분야의 교육 및 자문 4. 복지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5.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6.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7. 국내·외 복지 분야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8. 저소득 취약계층 법률 및 금융 복지서비스 지원 9. 복지관련 자료 개발·관리 및 보급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는 사업 11.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임원 및 이사회 관련(안 제7조, 제9조 관련)

- 본 개정 조례안 제7조에서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한 내용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표준정관(안)」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며, 현재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정한 임원 임명 규정²⁾과도 일치하는 것이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1)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은 시장, 시의회, 이사회로부터 각각 추천을 받아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임명

2)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8조(임원의 임명)** 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단 조례 또는 정관에 의해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 그러나 개정안 제9조제3항에서는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³⁾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한 현행 규정을 대표이사가 우선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대표이사의 지나친 권한 행사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서울시(복지본부)에서도 복지재단 운영의 상호 견제와 균형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임. 본 조항은 서울시에서 제출한 현행 규정 유지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개정안 및 수정안 비교표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이사회) 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u>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순</u> 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이사회) 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u>대표이사,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록순</u> 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이사회) 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u>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u> 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제8조(임원의 임면) ③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관
2. 서울특별시 경영기획관